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28호 2020. 4. 16.(목)

선 람	기 관 의 장

규 칙

○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예천군 규칙 제1272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72호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예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예천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심사 안건이 부결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table><tr><th>구분</th><th>기준</th><th>감점</th></tr><tr><td rowspan="4">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td><td>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 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td><td>20</td></tr><tr><td>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td><td>15</td></tr><tr><td>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td><td>10</td></tr><tr><td>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td><td>5</td></tr><tr><td rowspan="2">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종사자 인당 감점</td><td>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td><td>5</td></tr><tr><td>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td><td>10</td></tr></table>	구분	기준	감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 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20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15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10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종사자 인당 감점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5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10	20
	구분	기준	감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 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20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15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10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종사자 인당 감점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5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10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예시 :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20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table><tr><th>기준</th><th>감점</th></tr><tr><td>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td><td>20</td></tr><tr><td>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td><td>15</td></tr><tr><td>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td><td>10</td></tr></table>			기준	감점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20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15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10									
기준	감점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20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15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10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 문성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전문성 평가 기준〉 <table><tr><th>기준</th><th>득점</th></tr><tr><td>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td><td>5</td></tr><tr><td>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 5년 이상</td><td>3</td></tr><tr><td>노인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 3년 미만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 1년 이상 ~ 5년 미만</td><td>1</td></tr><tr><td>복지관련 경험 없음</td><td>0</td></tr></table>			기준	득점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	5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 5년 이상	3	노인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 3년 미만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 1년 이상 ~ 5년 미만	1	복지관련 경험 없음	0	5						
기준	득점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	5																			
노인복지 실무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 5년 이상	3																			
노인복지 실무경력 1년 이상 ~ 3년 미만 또는 사회복지 관련 경력 1년 이상 ~ 5년 미만	1																			
복지관련 경험 없음	0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최종) 이력 〈평가 기준〉 <table><tr><th>기준</th><th>득점</th><th>기준</th><th>득점</th></tr><tr><td>A(최우수)</td><td>5</td><td>D(보통)</td><td>2</td></tr><tr><td>B(우수)</td><td>4</td><td>E(미흡)</td><td>1</td></tr><tr><td>C(양호)</td><td>3</td><td>평가거부</td><td>0</td></tr></table> ※ 평가이력이 없는 경우와 신규설치의 경우 3점			기준	득점	기준	득점	A(최우수)	5	D(보통)	2	B(우수)	4	E(미흡)	1	C(양호)	3	평가거부	0	5
기준	득점	기준	득점																	
A(최우수)	5	D(보통)	2																	
B(우수)	4	E(미흡)	1																	
C(양호)	3	평가거부	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5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 1회 이상)	5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5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5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5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3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여부	2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및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2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ex. 공개모집 여부 등)	2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2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3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2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예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2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인력기준 적합여부 심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적합여부 심사 등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내 구성
-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 5급이상 공무원 1명
- 위촉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예천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회의에 관한 사항 (제8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심사 가능

라.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제9조)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마.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2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